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4,229,493	19,926,885
일반회계		419,681,471	12,590,444
특별회계		244,548,022	7,336,441
기타특별회계		244,548,022	7,336,44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24,525	30,736
	주차장특별회계	288,335	8,6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508,219	75,2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7,261,236	5,017,83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98,029	29,941
	치수사업특별회계	448,916	13,46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9,140	18,274
	기반시설특별회계	92,044	2,761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1,317,578	2,139,5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180,794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9,448,04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